

# 사업장 폐기물 운반·처리 계약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배출자를 "갑"이라 칭하고 수집·운반자를 "을"이라 칭하며, 수집 처리업자를 "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수행한다.

## 제 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폐기물 관리령에 의하여 "갑", "을", "병"간의 상호 폐기물 처리업무를 원활히 하고, 적법하게 수행하고자 함에 있다.

## 제 2조(위탁처리)

"을"은 "갑"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제 3조의 폐기물을 계약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병"은 "을"이 수집, 운반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 3조(계약품목 및 단가)

폐기물명	성상	단위	운반금액/Ton	처리금액/Ton	발생량/년	처리방법	비 고
폐합성수지	고상	Ton			400톤	소 각	부가세 별도

## 제 4조(계근)

- 폐기물의 계근은 "갑"이 지정한 공인계근소 또는 "갑"과 "을", "병"의 합의에 의해 지정된 계근소에서 폐기물을 계량하며, 기타 계근소에서 계근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계근단위는 kg으로 하며, 계근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제 5조(인수, 인도)

"을"은 "갑"의 요청시 1일 이내 "갑"의 해태제과식품(주) 광주공장 및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상차하여, "병"의 처리시설 구역까지 운반한다.

## 제 6조(준수사항)

- "갑", "을", "병"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갑", "을", "병"은 본 계약 체결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갑"은 "을"에게 필요시 ①배출자 신고필증 ②폐기물 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에게 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자 등록증 및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병"은 "갑"에게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허가조건, 장비목록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수량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병"의 장소에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을"은 운반시 적재중량 및 높이를 준수하며 폐기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결속하거나 덮개로 덮는다. 또한 관련법규에 의하여 허가된 차량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송허가 대상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운송할 수 없다.

4. "병"은 "을"이 운반한 "갑"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을"과 "병"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령을 준수하고, "갑"으로 하여금 폐기물 배출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게끔 조력을 하여야 한다.
6. "을"과 "병"은 전항의 위반으로 "갑" 또는 "을"과 "병"이 관계관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빠른 시일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갑"의 원활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을", "병"은 폐기물 처리시(수집,운반,처리)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 간이인계서 작성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확인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7조(대금지급)**

1. 폐기물 처리대금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정산하여 "을"을 발행인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한다
2. "갑"은 "을"에게 통보 받은 폐합성수지의 처리 대금을 갑의 사규에 따라 지급한다.

**제 8조(책임한계)**

1. 본 계약서에 명시된 폐기물을 "병"의 시설구역까지 운송중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지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병"이 진다.
2. "을"과 "병"은 계약기간중 위탁받은 폐기물을 "갑"의 사전 서면동의에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안되며, 이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갑"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목적용도로의 사용이라 할지라도 "갑"의 관리에서 벗어난 본 계약 폐기물은 "을", "병"이 자기의 책임으로 동물사료용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조(비밀유지의무)**

1. "을", "병"은 본 계약기간 중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갑"의 기술 정보 영업비밀, 유통정보, 자료등(이하 "비밀등"이라 함)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후 "갑"의 요구시 그 비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을", "병"은 본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후에도 비밀등을 "갑"의 사전 서면 승락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을", "병"은 그 임직원 및 관련자로 하여금 위 각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조(재위탁, 재판매 금지)**

"을"과 "병"은 계약기간중 위탁받은 폐기물을 "갑"의 사전 동의없이 다른 폐기물 처리업자에 재위탁, 재판매 할 수 없다.

**제 11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다만, 위 종료일부터 1개월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 제 12조(계약의 해지)

1. "갑", "을", "병"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1이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정지된 때
  - 2) 파산, 법정관리신청을 당하거나 한 경우
  - 3) 세금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압류 경매
  - 4) 제 8조, 제 1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갑", "을", "병"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 다음의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최고하고 동기간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때
  - 2)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체불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 3) 전항 제 3)호를 제외한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본 계약조건 이행을 태만한 경우
3. "갑", "을", "병"은 상대방에 대한 30일전의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조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 13조(기한이익의 상실)

전조 각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방당사자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당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 "병"은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제 14조(거래정지의 예고)

제 12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 "병"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도록 1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5조(손해배상 청구)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갑"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 "병"이 산정한 금액을 "을", "병"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 16조(상계)

1.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이행기의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을"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2. 전항의 상계는 상계할 때마다 수령증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을"에 대한 상계의사표시로서 상계할 수 있다.

## 제 17조(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정부규제 또는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당사자 일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다만, 위와같은 사유로 계약위반의 상태가 [1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18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분쟁이나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협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갑", "을", "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 19조(통지의무)

계약과 관련된 모든 통지는 이 기본계약상 주소지로 하며,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동사실통지의 태만으로 인해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전주소지에 통지함으로 통지의무를 면한다.

### 제 20조(신용정보제 동의)

양당사자[대표이사 및 그 관계인 포함]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함에 동의한다.

### 제 21조(기타)

1. "갑", "을", "병"은 본 계약서 및 폐기물 인계서, 간이인계서 작성 및 사업장 폐기물처리 확인서 관리대장등 폐기물 관리법령 규정에 의해 보관이 필요한 문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배출업소)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22  
해 태 제 과 식 품(주)광 주 공 장  
대 표 이 사   신 정 훈

"을" (수집,운반업소)

"병" (처리업소)